

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재난발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을 위해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안전 발생빈도가 적어 위원회의 상설 필요성이 약화되어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기능 정비(제2조)

-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기능 정비(평상시 안전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·제보 기능 삭제 등 정비)

나. 위원회 구성 변경(제3조)

- 지자체와 민간의 상호 협력활동 목적의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2인으로 변경(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)
- 조직개편(국장 직위 신설) 반영 및 재난유형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재난수습 부서장으로 탄력적으로 구성 하도록 당연직 위

- 원을 안전교통과장에서 재난업무 담당 국장·과장으로 변경
 -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(안전발생시 구성하고 심의,의결시 자동해산)
- 다. 위원장의 직무 추가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 회의 운영사항 변경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12.19. ~ 2025. 1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4-1855호, 안전교통과-5201(2025. 1. 16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9613(2024.12.11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9613(2024.12.11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 [가족복지과-20378(2024. 12. 17.)호],
[안전교통과-62622(2024.12.19.)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534(2025. 2. 12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4300(2025.03.17)호]

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
2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
3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참여,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
4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전 협의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된 사람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·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2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
3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.
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할 경우
2. 그 밖에 군수 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1. 회의개최 통지, 회의록의 작성·보관
2. 관계전문가·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
3. 위촉해제, 수당·여비 등 지급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중앙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소집시 위원 수당·여비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-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
연락처	(033) 330 - 2019